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선원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및
외부 노출 갑판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42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인 선원 관련 자료 요청	2
2.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8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제24조).

Ⅲ. 검토의견

1. 외국인 선원 관련 자료 요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¹⁾의 장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생략)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어선사고로 인해 305명이 사망하고 123명이 실종되는 등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와 비교할 때 사고 건수 중 64.9%, 사망자 중 78%가 어선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사고 현황

구 분	합 계	사 망	실 중	부 상
전체 해양사고	14,802건	391명	146명	2,005명
어 선	9,602건(64.9%)	305명(78.0%)	123명(84.2%)	1,593명(79.5%)
어선 외	5,200건(35.1%)	86명(22.0%)	23명(15.8%)	412명(20.5%)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연간 10,199명에 이르는 연근해어선 고용 외국인선원²⁾에 대해서는 출입항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현재 해경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출입항정보 수집 체계는 법무부의 외국인신원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 승선원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관이 여권번호 및 외국인신분증을 확인한

2) 해양수산부, 「한국선원통계」(2023년): 20톤 이상 어선에 고용된 외국인선원 기준

후 수기로 어선출입항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³⁾.

개정안은 이러한 외국인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어선사고 발생 시 외국인 선원의 승선 파악을 신속히 하여 구호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고,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여부 확인 등 선원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해경은 개정안 입법 시 외국인의 기본 인적정보와 출입국기록을 관리하는 법무부 외국인신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해져 외국인 선원의 신원에 대한 검색 및 검증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 외국인선원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일부 인적정보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⁴⁾.

3) 해경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외국인신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협의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률에 연계를 위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1) 우선, 안 제8조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요청하는 정보를 예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률 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계기관에 외국인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로 「출입국관리법」을 들 수 있는데, 동 법 제12조의2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8조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조세채납정보, 범죄처분결과정보 등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상 정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5)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 2)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에게 외국인 선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기관’의 범위⁶⁾에는 민간인이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신고소’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처럼 민간인을 행정기관 간 협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료 요청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로 대행신고소가 모두 폐지되어 개정안이 입법되어도 민간인이 외국인 정보 관련 자료 요청을 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법체계적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삭제 <2012. 2. 10.>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포함한다):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범죄금 납부정보·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
4. 출입국사범 조사: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
5. 사실증명서 발급: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 3) 한편, 2025년 6월 21일 시행예정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578호, 2024.12.20. 일부개정)을 보면, 제78조의2에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기관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당 법률의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이 ‘수사, 공소제기,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과 같이 ‘출입항 신고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관계 기관의 정보 요청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6.21.][법률 제20578호, 2024.12.20. 일부개정]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 시 신속한 외국인선원 정보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의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u>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u>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기상악화와 어선 노후화, 어업채산성 악화로 인한 무리한 조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구조 지연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음.

[표] 어선사고 인명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주요사고					안전 사고	좌초	접촉	기타
		소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합계	547	213	53	105	25	30	320	1	7	6
2019	79	40	10	15	0	15	38	0	0	1
2020	99	35	7	20	0	8	60	0	4	0
2021	89	29	5	20	3	1*	59	0	1	0
2022	83	25	6	12	3	4	56	0	0	2
2023	78	26	10	14	2	0	48	0	1	3
2024	119	58	15	24	17	2	59	1	1	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2025년 10월 시행예정인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와 「어선안전조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⁷⁾에 따르면, 기상특보⁸⁾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등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그 밖의 경우에는 어선원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미착용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음.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0.18. 법률 제19011호, 2022.10.18., 일부개정) *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5.10.19. 시행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0.19. 해양수산부령 제667호, 2024.5.22., 일부개정)

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란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 현행법(시행예정 포함)과 개정안의 구명조끼 의무화 범위 비교

현행법	법률 제19011호 (2025.10.19. 시행예정)	개정안
○(법 제24조)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 제24조)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규칙 제13조)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어선 승선자가 <u>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u>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주: **굵은글씨**는 2025.10.19.에 시행되는 규정

이에 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도의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관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경찰청 등에서 연구·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의 전복, 화재 등으로 인해 해상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명조끼 미착용 시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최근 5년(2019~2023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전체 해양사고의 사망·실종자 중 약 81%가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나타났고⁹⁾,
- 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와 별개로 최근 5년간 레저활동 등으로 발

9) 사망·실종자 구명조끼 착용 현황: (착용) 44명(19.0%) / (미착용) 187명(81.0%)

생한 연안사고¹⁰⁾ 피해자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87.1%, 사망자 중에서는 미착용률이 91.9%로 나타나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여 인명사고 발생을 줄이려는 개정안의 내용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사고 발생 시 해상으로 낙하할 위험이 큰 노출 갑판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규제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을 통한 인명사고 예방이라는 입법목적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구명조끼의 착용 의무화가 기존 ‘기상특보 발효시’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로 확대되는 데 약 3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소요¹¹⁾¹²⁾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착용 의무자 범위의 확대에 앞서 수범자인 어선원 등이 제도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마련할 필

10) 연안사고: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고

11) 구명조끼 의무 착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2022.10.18.에 공포·시행되었으나, 부칙에서 구명조끼 의무 착용에 관한 안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5.10.19.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함.

12)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을 2인 이하 승선 시에 우선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2인 이하 조업어선은 사고 시 타인의 즉각적 구조지원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명조끼 착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임.

요가 있어 보임.

- 현재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을 포함한 어선안전장비지원을 위해 매년 약 7억원의 국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이를 통해 2023년에는 1,860벌, 2024년에는 1,725벌의 구명조끼를 어업인 등에게 보급하였음¹³⁾.

[표] 최근 5년(2020~2024년)간 구명조끼 보급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명조끼(벌)	6,500	4,773	2,113	1,860	1,725

자료: 해양수산부

-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으로, 우선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감소 및 어민안전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13)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형태로 지원됨.

참고 1

국내 구명조끼 현황

□ 국내 구명조끼 업체별 개발현황

구분	고체식		팽창식					
제조사	해상산업		정우 레스폴	우성 아이비	스페이스	한국물자 조달(주)	엠제이 컴퍼니	몽블랑 임
제품사진								
모델	HS-2	HS-3	JW-9001	WSML01	SP-2020	KGS-A007	MJ-20	MBL-19
가격	24천원	24천원	295천원	187천원	130천원	130천원	130천원	130천원

□ 국내 구명조끼 형식별 비교

- (국제기준형) SOLAS 및 LSA CODE(국제구명설비기준) 등 국제협약을 준용한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
- (착용성 향상형) 국내 어선 어로작업 환경 및 상시착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형식승인기준 요건이 완화된 제품

구분	국제기준형(SOLAS TYPE)		착용성 향상형 구명조끼 (팽창식)	어선용 구명의 (팽창식)
	구명조끼 (고체식)	구명조끼 (팽창식)		
사진				
장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력성능	부피가 작아 착용 용이	①중량 제한 및 부력 성능 완화로 제품 경량화 가능 ②작업성 시험 및 재료시험 추가로 어로작업에 적합	
단점	①부피가 커서 상시 착용 불편 ②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어선의 경우 보관장소 및 정비 미흡	①팽창 가스실린더 정비(교체) 필요 ②비상 시 자동팽창 미작동에 대한 위험부담	SOLAS TYPE(고체식·팽창식) 비교하여 부력성능이 떨어짐	

참고 2

외국의 구명조끼 착용 규정 및 형태

□ 외국의 구명조끼 착용 규정

국가	시행년도	대상선박	의무 착용대상	비고
미국	-	모든 어선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	12m 이상 150N 12m 미만 100N
일본	2008	소형 어선	1인 조업 어선원	70N
	2003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12세 미만 소아, 수상오토바이 승선자	70N
	2018	총톤수 20톤 미만, 길이 24m 미만 유람선	탑승자 전원	70N
노르웨이	2015	모든 어선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	-
벨기에	-	모든 어선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	-
프랑스	-	모든 어선	갑판 작업 중 또는 악천후시	-
스페인	2007	24m 이상 어선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	개인용 radio beacon 휴대의무
아일랜드	2002	모든 어선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	선장 책임
아이슬랜드	-	모든 어선	선미문 근처 작업 선원	-
포르투갈	-	9m 미만 어선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	-
호주	2012	대다수 레저보트	선주, 탑승자	선주·선장 책임
남아공	1994	25톤 이하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	선장 책임

□ 외국의 구명조끼 형태

종류	Type(고체식)		Type(팽창식)	
일본				 TYPE G(遊漁船非対応)
유럽				

참고 3

'24년 어선사고 현황

□ '24년 어선 사고 현황

- '24년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는 119명, 전복·침몰·충돌·화재 등 주요 사고에 의한 피해는 58명, '25년 주요사고는 31건, 피해 24명

- 사고원인은 기상악화*, 어선노후화, 재산성 악화**로 인한 무리한 조업 등 인적과실로 추정, 인명피해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구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

* 24년 풍랑특보는 10년 전보다 2.1배('15년 459→'24년 929건) 증가

** 지난 9년(15~23) 조업 생산액 증가는 18.9%에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72% 상승

□ 어선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주요사고					안전 재해	기관 손상	부유물 감김	좌초	접촉	운항 저해	그외
		소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합계	11,759	2,147	1,051	334	163	599	826	3,465	1,831	713	109	331	2,337
2019	1,951	367	176	68	35	88	180	540	276	110	12	68	398
2020	2,100	409	206	73	38	92	149	605	285	154	17	67	414
2021	1,786	356	176	48	27	105	147	531	267	91	23	43	328
2022	1,718	306	143	50	12	101	113	512	248	114	15	53	357
2023	2,047	372	192	43	31	106	101	606	359	121	19	42	427
2024	2,157	337	158	52	20	107	136	671	396	123	23	58	413

□ 인명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주요사고					안전 사고	좌초	접촉	그외
		소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합계	547	213	53	105	25	30	320	1	7	6
2019	79	40	10	15	0	15	38	0	0	1
2020	99	35	7	20	0	8	60	0	4	0
2021	89	29	5	20	3	1*	59	0	1	0
2022	83	25	6	12	3	4	56	0	0	2
2023	78	26	10	14	2	0	48	0	1	3
2024	119	58	15	24	17	2	59	1	1	0